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53593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나535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50901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문희춘, 박진명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변론 종결 2024. 6. 21.

판결 선고 2024. 11.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5090117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5,193,427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7.부터 2024. 1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5,193,427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0. 7.부터 2022. 4.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3호증(신용보증약관)에 따르면, 보증기한 이내에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A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을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95,193,427원[= 보증채무금 원금 989,824,000원(= 1,041,920,000원 × 보증한도 95%) + 2021. 9. 14.부터 2021. 10. 5.까지의 이자 5,369,427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금 이행 청구 다음날인 2021. 10.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가 2021. 9. 14.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피고에게 주채무인 이 사건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른 지급보증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고,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①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기존의 법률관계에 의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전자통지 관련 을 제1호증(신용보증해지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신용보증부 대출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별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실제로 주채무가 상환된 사실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해지통지는 원고 직원의 개입 없이, 전산프로그램 개발상 오류로 인하여 자동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 후 바로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해지철회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발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전자통지로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거나 보증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지급보증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성수

판사임은하

판사김용두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인바,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 참조).